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 상향 등〉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87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 상향 및 고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2
※ 참고자료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 및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16
2. 미국 연방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현황	2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2. 24.

다.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 상향 및 고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범위에 해당 조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u>제34조제2항</u> 에 따른 업무의	4. ----- ----- ----- ----- ----- <u>제34</u>

현행	개정안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u>조제2항 및 제36조의2</u> ----- ----- -----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u>제34조제2항</u> 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u>제34조제2항</u> <u>및 제36조의2</u>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u>에 대하여 10년</u>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 ----- ----- ----- ----- ----- ----- <u>20년</u> ----- ----- -----

현행	개정안
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 -----30배-----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 혐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제재하여 연구운리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정제재 수단임.

- 현행 제32조¹⁾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참여제한과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²⁾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참고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 및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해 연구비 정산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국가연구개발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2021년) 이후 연도별 제재처분 수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재체계의 역지력과 실효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연도별 제재처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처분 수 (건)	참여제한	1,258	1,094	1,337	1,155	1,017	5,861
	제재부가금	59	74	115	163	146	557

※ 소관 부처가 NTIS에 등록한 제재정보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사유별 제재부가금 건수와 참여제한을 처분연도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제재처분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국가 자산의 누수를 엄격히 방지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평생까지 참여제한을 하는 사례(참고2: 미국 연방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현황)가 있음.

< 최근 5년간 사유별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

(단위: 건, 억원)

사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구과정과 결과 극히 불량	건수	-	7	37	105	50	199
	부과액	-	12.9	107.9	118.0	156.6	395.4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 변경·중단	건수	-	-	26	23	16	65
	부과액	-	-	37.5	38.9	25.4	101.8
위조·변조·표절	건수	-	1	1	1	5	8
	부과액	-	1.6	0.4	0.3	17.2	19.4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건수	2	19	19	15	26	81
	부과액	0.2	6.1	13.9	4.3	14.4	39.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신청 또는 수행	건수	-	-	2	6	9	17
	부과액	-	-	1.8	4.7	6.9	13.3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건수	-	-	1	-	4	5
	부과액	-	-	1.7	-	11.0	12.7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건수	1	3	11	6	15	36
	부과액	2.4	3.6	12.0	4.2	11.0	33.1

※ 소관 부처가 NTIS에 등록한 제재정보에서 혁신법 제재사유별 제재부가금 건수와 부과액을 처분연도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5년간 사유별 참여제한 부과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구과정과 결과 극히 불량	8	41	113	246	243	651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 변경·중단	-	3	138	128	91	360
위조·변조·표절	-	1	6	9	23	39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5	40	58	102	89	294
연구개발 성과 소유 위반	1	-	-	-	-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신청	1	1	39	14	23	7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또는 수행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	-	3	2	7	12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	14	51	25	63	156
기술료 미납	1	42	95	188	137	463
회수금 미납	5	133	75	203	222	638

※ 소관 부처가 NTIS에 등록한 제재정보에서 혁신법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을 처분연도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2조제1항의 제재 처분 상한 상향과 관련하여, 현행 최대 10년의 참여제한 한도도 사실상 연구자의 학문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이를 20년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상한 역시 30배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는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유사 범용 법률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³⁾이나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금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⁴⁾ 등에서도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최대 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⁵⁾. 법무부 역시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연구개발비의 30배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법령상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감경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객관적·합리적 처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연구책임성 강화를 통한 공익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선별적 지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 5) 최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2026. 8. 28. 시행)한 사례는 있음.

사업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적절한 제재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실제 제재처분 현황과 법률상 최대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현행법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 1,034건 중 8년 초과 10년 이하의 제재는 단 1건(0.1%)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887건(85.8%)이 2년 이하의 처분을 받았음. 제재부가금 처분 역시 총 415건 중 1배 이하가 411건(9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배를 초과하여 부과된 사례는 전무함.

< 참여제한 처분 현황 >

구분	0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6년 이하	6년 초과 8년 이하	8년 초과 10년 이하	합계
처분 수(건)	887 (85.8%)	92 (8.9%)	26 (2.5%)	28 (2.7%)	1 (0.1%)	1,034 (100%)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제재정보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처분된 참여제한을 처분 기간별로 집계(처분연도 '22~'24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재부가금 처분 현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금액) >

구분	0배 초과 1배 이하	1배 초과 2배 이하	2배 초과	합계
처분 수(건)	411 (99.0%)	4 (1.0%)	- -	415 (100%)

※ 소관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과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제재부가금 집계(처분연도 '22~'24년 기준)

- 이러한 현황만 놓고 보면,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상한인 참여제한 10년 및 제재부가금 5배의 범위 내에서도 시행령상 제재사유별 처분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제재 수준을 일정 부분 강화할 여지가 있어 보임.
- 다만, 법률에 규정된 상한은 개별 제재사유별 기본 처분수준이 아니라 전체 제재체계의 최대한도를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상 각 구간의 처분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상 상한의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될 수 있음. 즉, 현행 상한에 근접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제재사유별 기본 처분수준 자체가 낮아 엄중한 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고의적·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상 제재기준의 전반적인 상향이 필요하고, 이 경우 일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에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 제재

처분의 최대한도를 확대한 후, 후속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엄중한 처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제 처분 현황상 상한에 근접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 정비로 통해 달성 가능한 정책 효과, 그리고 제재수준 전반의 상향을 위해 법률상 상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36조의2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조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실질적 보완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⁶⁾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 행정기관은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아울러 실무상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절차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함. 실제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함.

6)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적발 후 형사 절차 연계 사례 ＞

제재대상자	소관 부처	제재 사유	형사절차 연계 내용
○○대학교 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감사로 연구비 부정 사용 확인 후 검찰에 고발장 접수, 징역 1년 6개월 판결 확정
(주)○○○○○○ ○○○○ 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경찰서에 수사 의뢰, 징역 1년 6개월 및 선고유예 2년 판결 후 3심 진행 중
(주)○○○○○○ ○ 이○○, 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현장조사로 부정사용 징후 포착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실형 선고 후 항소 진행 중
(주)○○○○○○ ○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현장조사로 부정사용 징후 포착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실형 선고 후 항소 진행 중
(주)○○ 홍○○	산업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검찰 송치 결과 피의자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주)○○○○○○ 박○○	기후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부정 사용 적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에 고발, 수사 진행 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7), 「공공주택 특별법」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9) 등과 같이 개별 행정법에서도 소

7)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
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
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
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 기관의 조사·감독 권한과 연계하여 수사기관 고발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명문으로 두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고발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명문화는 소관 부처의 조사 결과를 형사절차와 연계하는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36조의2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규정과의 관계, 개별 법상 유사 입법례의 존재,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실제 집행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문언과 실익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객관적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사항임.

- 따라서 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범죄혐의 유무를 수사 이전에 단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판단

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은 경우		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 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 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		2년

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

우	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	---

나.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	---

참고2

미국 연방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방정부 예산의 민간지원 방식

구분	장려금 협약 (Grant Agreement)	협동 협약 (Cooperative Agreement)	계약 (Contract)
법적개념	연방기관이 대가없이 외부에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연방기관이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수행관리	자금지원 후 지원기관의 개입이 거의없음	목적달성을 위해 지원기관이 일정부분 개입	계약 이행과정을 지원기관이 세밀하게 점검하고 관여

□ 연방정부 사업 참여제한 (R&D 외 사업도 포함)

- 사기, 거짓 진술, 기록 위조, 절도, 뇌물수수, 고의 계약 위반, 사업이행 실패 등 해당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
 - (중단: **suspension**) 조사, 사법·행정절차 등 종결시까지 절차로, 연방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12개월 일시 배제(1회, 6개월 연장 可)
 - (금지: **debarment**) 연방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통상 ~3년 배제하나, 부정행위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 평생까지 가능

* (예시) 다수 논문에서 연구기록 등 연구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 허위 자료에 기반한 연구개발 과정 전반(신청-수행-논문출판-보고)에 걸친 부정 행위

구분	미국	한국
참여제한	- 일시중지/잠정제한(Suspension) 최대 1.5년 - 참여 배제(Debarment): 통상 최대 3년~연장 가능* * 최대 평생도 가능하여 영구 제명 효과 ※ 모든 연방정부 사업에서 배제	- 최대 10년 부과 ※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참여 배제